

2017년도

www.kuksiwo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Q&A 자료집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목차

필기시험

시험 전

1.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1
2. 시험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
3.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하는 응시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3
4.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5
5. 시험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7
6.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8
7.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9
8.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10
9. 인적사항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11
10.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궁금합니다.	13
11.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지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15

시험 중

1. 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나요?	17
2. 응시자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18
3. 예비마킹을 해도 되나요?	21

시험 후

1. 본인의 답안카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3
2. 답안카드에 이름(응시번호)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상 채점되나요?	25
3.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27

컴퓨터화시험

1. 기존의 시험방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30
2. 시험 중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3. 컴퓨터화시험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32
4. 컴퓨터화시험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3



목 차

실기시험

직종공통

- 1. 실기시험 시 복장 제한이 있나요? 36
- 2. 시험 중 화장실을 갈 수 있나요? 37
- 3. 누가 채점하나요? 38
- 4.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만 치를 수 있나요? 39

응급구조사

- 1.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41
- 2. 시험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45
- 3. 응시자 대기실에서 똑같은 번호를 뽑으면 같은 문제에 응시하나요? 47
- 4. 시험 중 장비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48
- 5.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49

치과위생사

- 1.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51
- 2. 평소 손에 땀이 많은데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 53
- 3. 응시자 대기실에서 똑같은 번호를 뽑으면 같은 문제에 응시하나요? 55
- 4. 시험 중에 기구를 떨어뜨려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56
- 5. 시험 시작 전에 의자의 높이, 마네킹 각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57
- 6.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58

치과기공사

1.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60
2. 전기조각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62
3. 배부 받은 재료에 이상이 있으면 새로 받을 수 있나요? 64
4. 시험장 전문위원이 누구인가요? 65
5. 기공물 관련 자료 또는 미리 만들어 온 기공물을 보면서 조각해도 되나요? 66
6. 시험 중 화재 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67
7. 기공물 제작 시 반드시 시험장에서 제공한 왁스만 써야 하나요? 68

의지·보조기기사

1.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71
2. 보호구는 개인이 지참해 가야 하나요? 74
3. 합격자 결정 시 의지 제작 성적과 보조기 제작 성적에 각각 과락을 적용합니까? · 75
5. 시험 중 장비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76
6.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77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필기 시험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대한민국고시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전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일정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7월 초에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고되는 시행계획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추후공지'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계획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2. 시험일정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 응시수수료
 - 3) 시험일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 5) 필기시험 지역
 - 6) 시험장 공고일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6. 실기시험 시험방법 및 응시자 준비물
7. 합격자 결정 방법
8. 응시자 유의사항
9.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사항

단, 시험 장소는 시행지역만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장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시험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험일은 응시자의 학업 또는 생계활동 등 뿐 아니라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각 시도청의 업무 일정,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험장의 상황, 출제위원들의 소집 가능 일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정하게 됩니다.

시험일을 정함에 있어 시험장 임차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임차하므로 수업일정, 방학시기, 교실 수, 수용 인원, 다른 시험 기관(민간 시험 기관 등)에 임대계획 여부 뿐 아니라 응시자의 접근 편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응시자의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시험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하는 응시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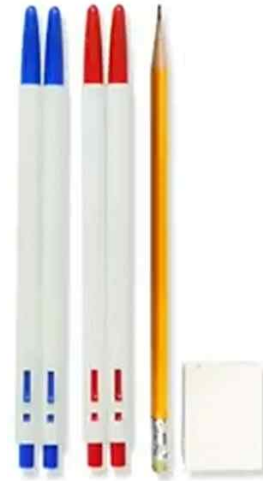
응시자가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입니다.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인정되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필기도구는 응시자가 사용할 필기도구를 말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국시원에서 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행본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하는 응시자 준비물은 무엇인가요?(2)

시계, 휴지, 돋보기, 음료수는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계는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계를 지참하기를 권장합니다. 단, 스마트 워치, 계산과 통신 기능이 탑재된 시계 등은 전자장비로 분류되므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1)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없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 됩니다. 전자사전, 계산기도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 됩니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를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으로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이외에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2)

부정행위자의 기준

-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응시자 준수사항

-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 시행계획 공고에서 안내하는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기준 중 발췌



시험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험장소 공고일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상단의 “시험장소”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직종을 선택하면 시험장소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 기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표에는 시험장과 약도, 교통편이 표시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국시원은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7년도 하반기부터 위생사, 영양사 국가시험에 시험장선택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사, 영양사 국가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시험장소가 안내되고 접수 시에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원서 수정”메뉴에서 응시표출력기간 7일전까지 시험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에 시험장 및 시험장 주소가 안내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응시표 출력기간 7일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응시지역은 변경하실 수 있으나 시험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부터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배정이 완료되어 이어나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지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시험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만 선택할 수 있고, 응시표 출력기간부터는 응시지역 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1544-4244

제출 서류 : 응시지역 변경신청서(전화 상담 후, 이메일 송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응시자는 접수할 때 선택하여 국시원이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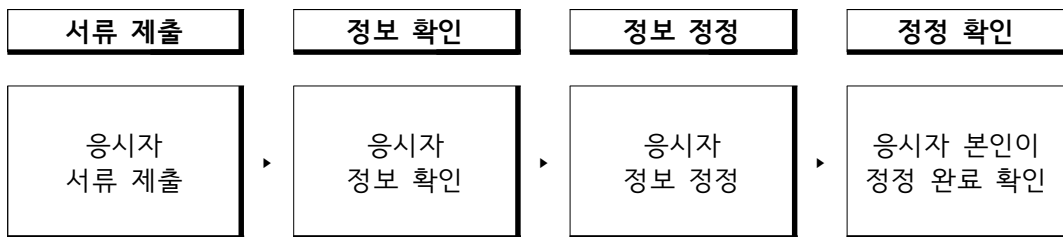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시원은 미리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각 시험장에 배포하며, 감독관은 이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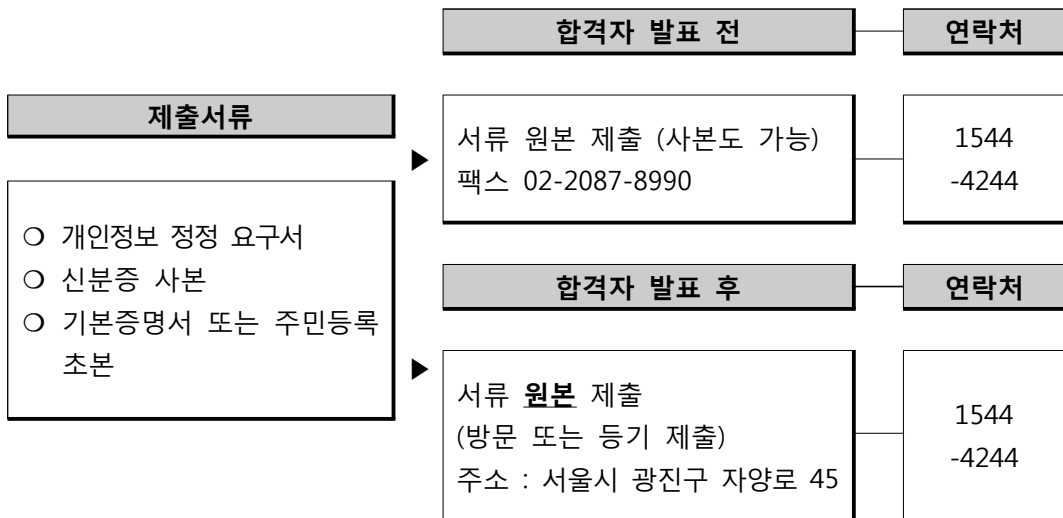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가 배정된 시험장에만 배포하므로, 응시자의 정보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1)

원서 접수 이후의 인적사항 정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 사항을 정정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격자 발표 전에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후에는 서류상으로만 인적 사항의 변경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의 원본만 인정됩니다.

인적사항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2)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시, 응시원서 접수 시의 사진을 교체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한 후 3.5×4.5cm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는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
선택]-[서식모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제30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XXXX-XXXX
	생년월일 19XX.XX.XX		
	주소 현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 열람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정·삭제	응시 시험 의사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예시) 개명하여 다른 정정을 요구함 홍길동(개명전) → 홍길동(개명후)	<사실> 사실 증명서 부착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요구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작성방법

1. '대리인'란 대리인키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실을 선택하며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 표시를 하고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기재 예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궁금합니다.(1)

장애나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는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험 중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제공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 후 결정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감독관 배치, 특별시험실 지정,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제작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대상자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또는 급성질환 등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전날이라도 응시자가 국시원에 연락하여 본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 당일까지 반드시 의사 진단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편의가 매우 한정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궁금합니다.(2)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제3조 제1항 관련)

시험 직종	의사	시험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기시험 <input type="checkbox"/> 실기시험 ※ 해당 시험구분(필기/실기)별로 각각 신청
성명	홍길동	응시번호	85011284
생년월일	19XX.XX.XX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010-XXXX-XXXX 보호자 : 010-XXXX-XXXX
주소	12345 현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일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상제가능> 시력장애 1급		
첨부서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서 ※ 위 서류(사본) 중 한 가지 제출		
편의 제공	시험시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장	
	문제지 (책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독 <input type="checkbox"/> 별도문제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350% <input type="checkbox"/> 82%)	
	답안지 (책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대필 <input type="checkbox"/> 별도답안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350%)	
	시험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시험일 변경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일 ※ 의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실기시험에 한함.	
요청 사항	시험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사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신청서 기재 시 <뒷면>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별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XX.XX.XX. 성명(대리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시험관리-내규 43-898
(16.08.04. 승인)

A4(210 × 297)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작성 예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지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지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KCD-7) 제1·3권
-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의 제3권은 국문색인, 영문색인 둘 중 1권만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 ※ 위 지정도서는 시행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지정도서 외에 각 도서의 구판이나 제본(복사본), 관련 자료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구판이나 제본(복사본), 관련 자료를 지참했다면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에도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KCD-7)제1·3권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 (ICD-9-CM-Volume 3)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시험 장

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나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시간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제출한 후 소지품은 교실에 둔 채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시험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시험종료 타종 이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

부정행위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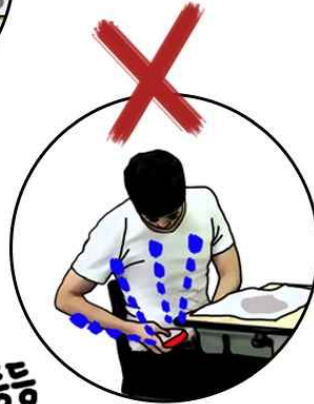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합니다.

부정행위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2)

문제지를 훼손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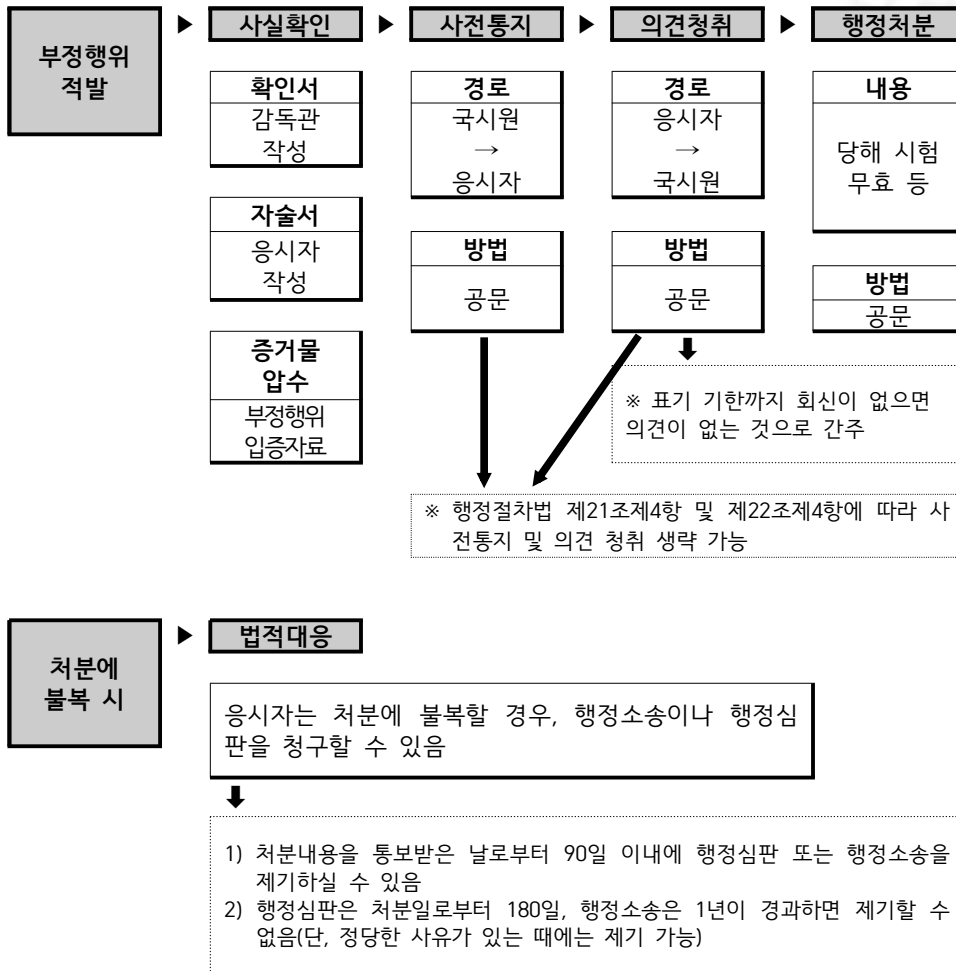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소지

부정행위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3)



위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와 별개로 국시원은 부정행위 내용이 국가시험 시행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자를 고발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비마킹을 해도 되나요?

OMR 답안카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안카드 채점은 전산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다면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표기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 후

본인의 답안카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1)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합격자 발표 후,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답안카드 열람을 위해서 요청자의 답안카드를 찾아 준비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예약시간에 맞추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 열람 예약은 열람 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을 통해 응시직종, 성명, 응시번호, 열람을 원하는 교시, 원하는 열람일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열람 일시는 전자우편 신청 내역을 확인한 담당자가 우선으로 확인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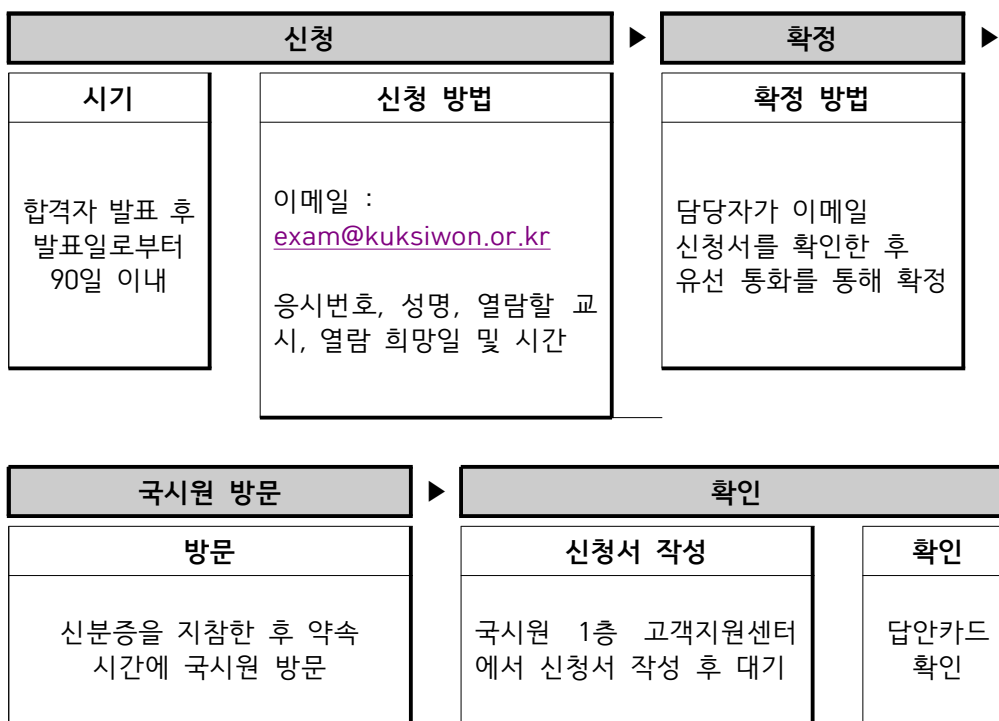
열람 예정일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을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 확인 시 다음의 사항은 불가합니다.

- ① 촬영, 녹음, 녹음, 이기는 불가합니다.
- ② 답안카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 ③ 응시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답안카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2)



[답안카드 확인 절차]

답안카드에 이름(또는 응시번호)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상채점 되나요?(1)

답안카드 기재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답안카드를 받으면 답안카드 뒷면의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가 없도록 합니다.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예시 : "의사"국가시험, "제1교시", "출수형", 응시번호가 "01010023", "출길동"이 1번 문제의 정답을 "㉔"번으로 표기한 경우

시험직종 (의사) 국가시험	1	0	0	0	0	0	0	0	0
제(1)교시	2	0	0	0	0	0	0	0	0
문제유형 출수형() 짝수형()	3	0	0	0	0	0	0	0	0
성명 홍길동	4	0	0	0	0	0	0	0	0
응시번호 01010023	5	0	0	0	0	0	0	0	0
감독관성명 *필지기재	6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13	0	0	0	0	0	0	0	0
	14	0	0	0	0	0	0	0	0
	15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18	0	0	0	0	0	0	0	0
	19	0	0	0	0	0	0	0	0
	20	0	0	0	0	0	0	0	0

응시자 유의사항

- 답안카드 작성(표기)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필, 볼펜 등의 사용 시 해당 문제가 "0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필기구 :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합니다.
2. 시험 전 기재·표기 사항 :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 시험직종 란에는 '의사' 등으로 해당 직종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교시 란에는 해당 교시를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 문제유형 란에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 응시번호 끝자리가 출수이면 출수형,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함)
 - 성명 란에는 응시자의 성명을 바른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응시번호 란에는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 답란은 "●"와 같이 안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한 표기(×, ∩, ∪, ∩)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답란의 수정 방법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수정한 후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연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4.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답안카드는 훼손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답안카드 하단의 타이밍 마크 (■■■■)를 절대로 칼로 긁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성명기재,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마킹을 전부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교시 답안카드가 0점 처리됩니다.

답안카드에 이름(또는 응시번호)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상채점 되나요?(2)

시험직종									
(의사) 국가시험									
제(2) 교시									
1	2	3	4	5	6	7	8	9	0
문제유형									
홀수형					짝수형				
성명									
홍길동									
응시번호									
3	5	0	1	1	2	3	4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시험교시를 마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교시별로 답안카드를 관리하므로 정상채점 됩니다.

문제유형별 답안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으로, 짝수면 짝수형으로 문제유형을 마킹해야 함.

성명 기재,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마킹 중 하나라도 올바르게 기재하였다면 정상채점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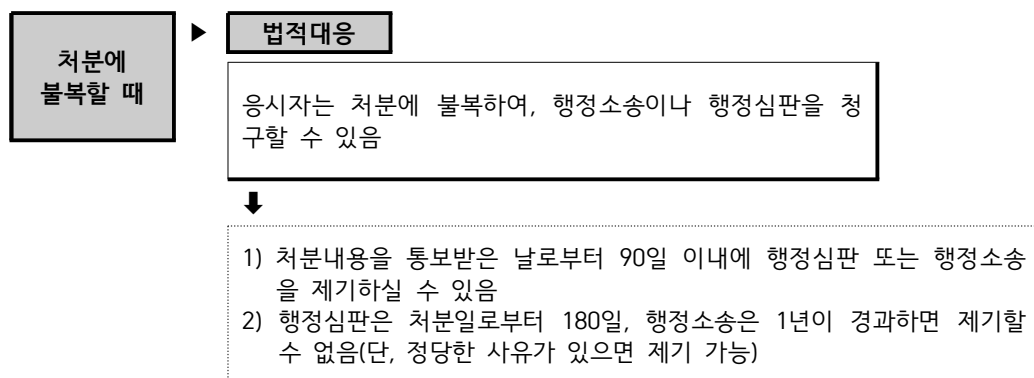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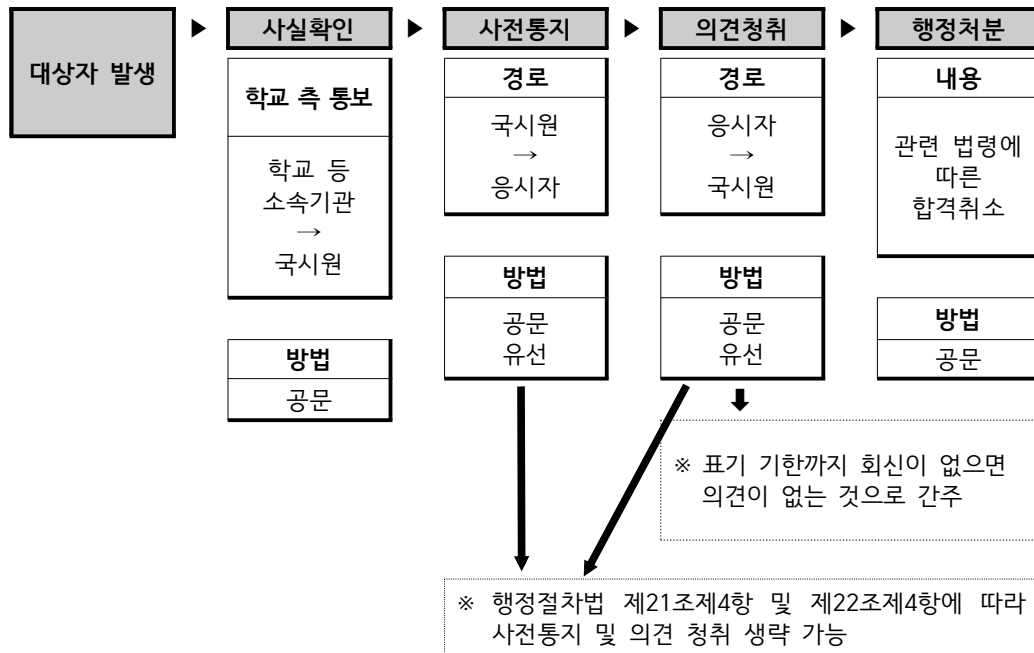
※ 성명 기재, 응시번호 기재, 응시번호 마킹을 모두 하지 않았다면 채점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1)

합격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격 결격 예시 : 교과목 이수조건 미달, 교육시간 미달, 학위 미취득, 졸업탈락 등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2)

합격 후 응시결격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합격 취소 처분이 완료되어야 다음 회차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응시자의 소속기관(학교 등)에서는 해당 응시자의 인적 사항과 합격취소 사유를 명시한 공문으로 국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컴퓨터화시험

기존 시험방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필기시험과 달리 컴퓨터화시험은 종이가 아닌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컴퓨터화시험은 OMR 답안카드에 답안을 마킹하는 대신 태블릿PC에 정답을 직접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따라서, 답안카드 작성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답안을 변경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남은 시험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에도 팝업창으로 남은 시간이 안내되어 시험시간 안배가 편리해 집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영상, 소리, 고화질 이미지 등)를 활용한 실무현장에 근접한 문제 출제가 가능하므로 응시자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의 '컴퓨터화시험(SBT)'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용 프로그램 주요 화면

■ 응시자 로그인

■ 문제풀이 현황

■ 답안제출

시험 중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중 태블릿PC, 이어폰 등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특성 상 태블릿PC가 멈추거나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PC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태블릿PC로 교체해 드립니다.

이 때, 기존 태블릿PC에 저장된 답안과 메모 정보 등을 모두 새로운 태블릿PC에 복원하여, 이전과 똑같은 상태의 태블릿PC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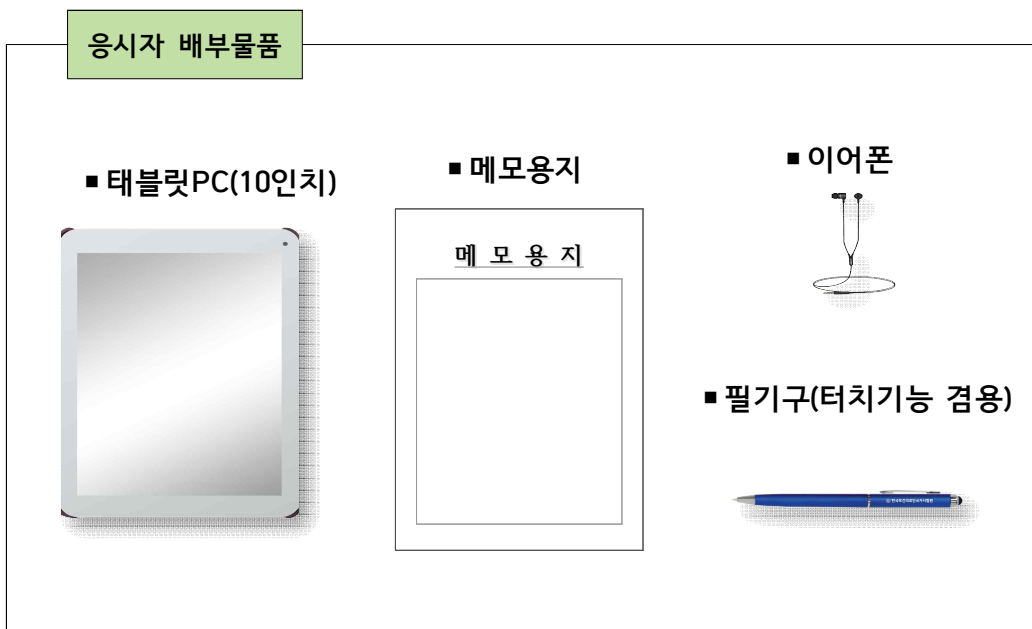
또한, 기기 교체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보장해드리므로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화시험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컴퓨터화시험은 태블릿PC, 메모용지, 이어폰, 필기구(터치기능 겸용)를 시험 당일 배부해 드립니다.

이어폰은 반드시 배부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직접 가져온 이어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응시표는 응시자가 반드시 지참하셔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화시험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컴퓨터화시험을 사전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실행이 가능한 모바일용 'SBT 튜토리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OS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톱PC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의 '컴퓨터화시험(SBT)' 안내 페이지에서 데스크톱PC용 'SBT 튜토리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실기시험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종공통

실기시험 시 복장 제한이 있나요?

복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장에서 소속 대학이나 소속기관이 드러나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명칭이나 상징이 있는 복장 또는 특정 대학 또는 기관을 암시하는 단체 복장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시험실에 입실하면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일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진행요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고 시험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합니다.

화장실사용을 매개로 시험문제 관련 정보 교환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순서대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할 때 알리지 않고 순서를 이탈하면 시험 진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진행요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누가 채점하나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위원은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위촉합니다.

- 1)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2)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기타 해당 분야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1명의 응시자에 대하여 2명의 채점위원이 채점합니다. 채점위원 2인이 채점하는 것은 채점에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점위원들은 미리 정해진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합니다.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채점 기준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는 채점위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만 치를 수 있나요?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하려면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즉, 전 회차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만 불합격하였다고 해서 다음 회차 시험에서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사업
한국보건과학연구원

응급구조사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1)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은 실기1, 실기2, 실기3의 3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응시자는 3개 시험실을 순회하며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도착하면 유도 표시를 참고하여 응시자 대기실로 갑니다.

응시자 대기실에서 본인 확인 후 본인이 응시할 시험문제를 추첨합니다. 실기 1과 실기 2는 각각 여러 문제 중에서 1문제씩 추첨하여 응시하고 실기 3(배근력)은 모두가 공통으로 응시합니다.



[응급구조사 실기시험 진행 순서]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2)

응시자 대기실		
1	입실	응시자 대기실에 입실합니다.
2	응시자 스티커 배부	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 스티커 2매를 배부 받습니다.
3	착석	자리에 앉습니다. (지정된 자리는 없으니 자유롭게 착석)
4	응시자 스티커 작성	자리에 앉아 응시자 스티커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감독관 호명	감독관이 호명하면 신분증과 응시자 스티커를 가지고 감독관에게 갑니다.
6	신분확인 및 문제 추천	신분을 확인 받고 문제를 추천합니다. * 단, 기호로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문제는 알 수 없고, 추천번호가 같다고 해서 같은 시험항목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항목은 시험실에 입실한 후 결정됨
7	감독관 확인	추천한 번호를 감독관이 응시자 스티커에 기재하고, 전체 기재 사항을 완료하면 감독관이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을 합니다.
8	응시표 부착	감독관이 나누어 주는 응시표를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합니다.
9	응시자 교육	자리에 착석하여,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진행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10	감독관 호명	감독관이 호명하면 신분증과 응시자 스티커를 가지고 감독관에게 갑니다. 시험실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3)

시험실 앞 대기

1	출발 대기	감독관이 호명하면 소지품을 챙겨서 앞으로 나옵니다.
2	시험실 이동	시험 보조요원의 인솔을 받아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3	대기석 착석	시험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앞 응시자 대기 자리에 앉습니다. ※ 자리를 지정해 줌
4	응시 대기	시험실에서 입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시험실 내 시험 시행

1	입실	시험실에서 호명하면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2	응시자 본인 여부 확인	입실 후 본인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말하고, 채점위원이 응시자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3	문제 확인	채점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소리 내지 않고 확인합니다. ※ 문제를 읽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4	문제 앞 이동	해당 장비 앞으로 이동합니다.
5	응시 준비 확인	채점위원이 응시 준비 완료 여부를 물어보고 응시자가 완료하였다고 대답하면 채점위원의 구령에 따라 시험을 시작합니다.
6	시험 중	(시험 시행)
7	시험 종료	시험종료 시험실을 퇴장하여 다음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4)

배근력 측정 시험실

1	입실	응시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도착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합니다.
2	채점표 작성	시험실 앞 부스에서 채점표 기재사항을 작성합니다.
3	준비 운동	작성 완료한 응시자는 준비 운동을 합니다.
4	응시자 본인여부 확인	채점위원이 응시자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배근력 측정	구령('하나, 둘, 셋, 그만')에 따라 배근력을 측정하고 종료합니다.
6	2차 측정 결정	곧바로 2차 측정을 할 것인지 휴식 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1차 측정이 만점이면 2차 측정을 하지 않음
7	시험 종료	시험종료 시험을 종료 후 시험장을 퇴장합니다.



시험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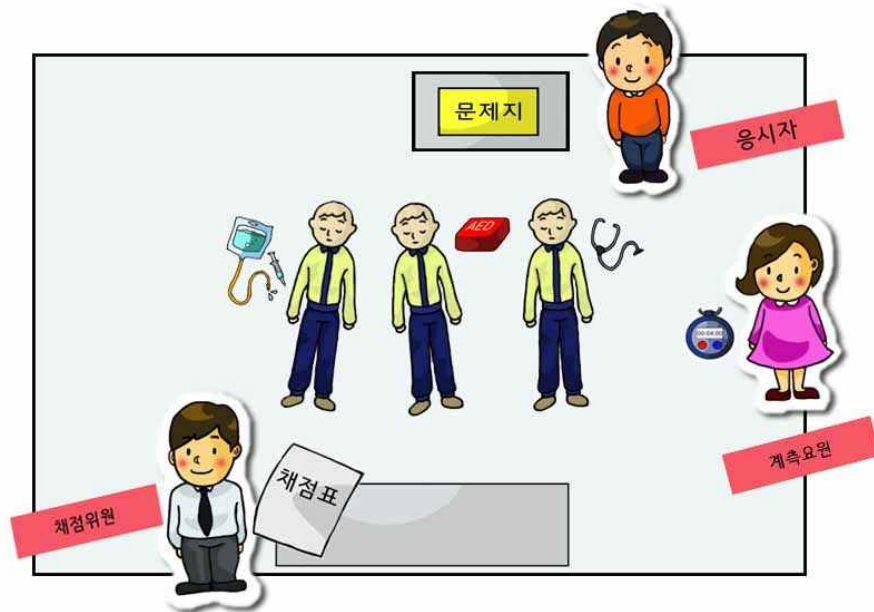
시험실에는 채점위원 2인, 보조요원 1인, 계측요원 1인이 있습니다.

채점위원은 응시자를 채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요원은 문제를 세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측요원은 시험 시간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실에 입실하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시험문제가 있습니다.
응시자가 추천한 번호와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을 조합하여 결정된 문제입니다.

응시자의 문제는 응시자의 시험실 입실 시간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사전에 그 문제만 세팅할 수는 없어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응시자는 계측요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의 도구 등이 세팅된 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시험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

채점위원은 응시자의 문제해결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 자리에서가 아니라 자리를 이동하면서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점위원의 이동이나 자세를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시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을 종료하면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그다음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시험실 앞 대기석에서 응시 차례를 기다릴 때 다른 응시자와 잡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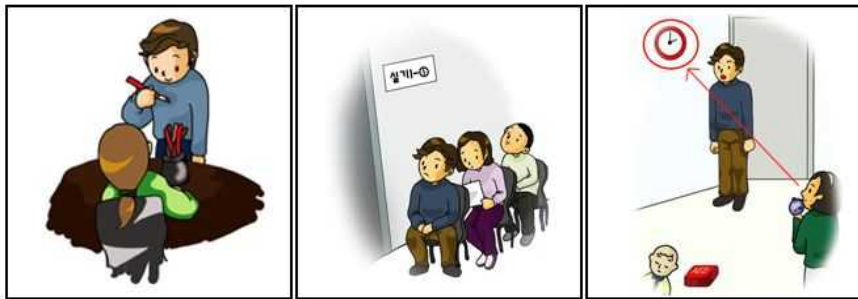
[실제 시험실 모습]

※ 문항에 따라 보조요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대기실에서 똑같은 번호를 뽑으면 같은 문제에 응시하나요?

응시자는 응시자 대기실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번호를 추첨하게 됩니다.

이 번호와 응시자가 실제 시험실에 입실하는 시간대를 조합하여 응시자가 치를 문제가 결정됩니다.



① 숫자 추첨

② 입실 대기

③ 입실 시간 확인

국시원에서는 사전에 번호와 시간대의 조합표를 만들어 문항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두었으며, 시험실 담당 시험진행요원이 응시자의 추첨한 번호와 시험실 입실 시간을 보고 위 조합표에 정해져 있는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같은 번호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실에 입실하는 시간대에 따라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응시자가 치르는 시험문제의 결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응시자 문제 결정 방법]

- ① 응시자 대기실에서 번호를 추첨
- ② 응시자가 추첨한 번호와 시험실에 입실한 시간을 조합하여 문제 결정
- ※ 대기실에서 추첨한 번호가 같다 하더라도 입실 시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짐.

시험 중 장비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시원에서는 시험에 사용하는 전체 장비를 시험 시행 전에 여러 차례 점검합니다.

장비 관련 전문인과 전공분야 대학교수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 전에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시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 돌발적으로 장비 불량,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채점위원은 그 즉시 계측요원에게 시간 계측 정지를 지시하고 시험진행요원에게 정상 장비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여 정상 장비로 교체한 이후 응시자의 시험을 속개하게 됩니다.

단, 응시자가 해당 장비 사용이 미숙하여 장비가 고장 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국시원에서는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되나요?

시험 시간은 문제별로 정해져 있고 시험 시에는 문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한 시간까지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만 채점결과가 인정됩니다.

시험실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계측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 만약 응시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계측요원은 '시험 종료'를 외치고 채점위원이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킵니다. 만약 시험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하므로, 계측요원의 '시험 종료' 구령 즉시 시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위생사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1)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 대기실

입실	응시자 대기실에 입실합니다.
착석	자리에 앉습니다. (지정된 자리는 없으니 자유롭게 착석)
응시자 스티커 배부	감독관으로부터 응시자 스티커 1매를 배부 받습니다.
응시자 스티커 작성	자리에 앉아 응시자 스티커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감독관 호명	감독관이 호명하면 신분증과 응시자 스티커를 가지고 감독관에게 갑니다.
신분확인 및 문제 추첨	신분을 확인 받고 문제를 추첨합니다. ※ 다한증 및 왼손잡이 응시자는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감독관 확인	추첨한 번호를 감독관이 응시자 스티커에 기재하고, 전체 기재사항을 완료하면 감독관이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을 합니다.
응시표 부착	감독관이 나누어 주는 응시표를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합니다.
응시자 교육	자리에 착석하여,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진행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감독관 호명	감독관이 호명하면 가방 등 소지품을 챙겨서 시험실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시험실 앞 대기

1 출발 대기	감독관이 호명하면 소지품을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2 시험실 이동	시험 보조요원의 인솔을 받아 시험실로 이동 합니다.
3 대기석 착석	시험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앞 응시자 대기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를 지정해 줌)
4 응시 대기	시험실에서 입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2)

시험실 내 시험 시행

1	입실	시험실에서 호명하면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2	문제 확인	문제를 소리 내지 않고 확인합니다. (문제를 읽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의자 조절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4	응시 준비 확인	채점위원이 응시 준비 완료 여부를 물어보고 응시자가 완료하였다고 대답하면 시험을 시작 합니다.
5	시험 중	(시험 시행)
6	시험 종료	시험 종료 ※ 시험시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슬기를 완료하였다면 채점위원에게 시험 종료를 알리고 퇴실 ※ 시험 종료 지시에 불응할 경우 0점 처리

시험을 종료한 응시자는 별도의 과정 없이 시험장에서 퇴장합니다.



평소 손에 땀이 많은데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1)

다한증이 있는 응시자는 장갑을 끼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다한증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와야 하며, 시험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에서 감독관에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은 응시자의 의사 진단서를 확인하여 장갑 착용을 허가하는 도장을 응시자 스티커에 찍고, 시험실의 채점위원은 이 스티커에 찍힌 도장을 확인하여 응시자에게 장갑 착용을 허가합니다.



평소 손에 땀이 많은데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도 되나요?(2)

바코드 부착	응시자 서명 (정자기계)	감독관인	추첨 번호	바코드 부착	응시자 서명 (정자기계)
		다한증확인	시험 항목		

[응시자 스티커의 다한증 확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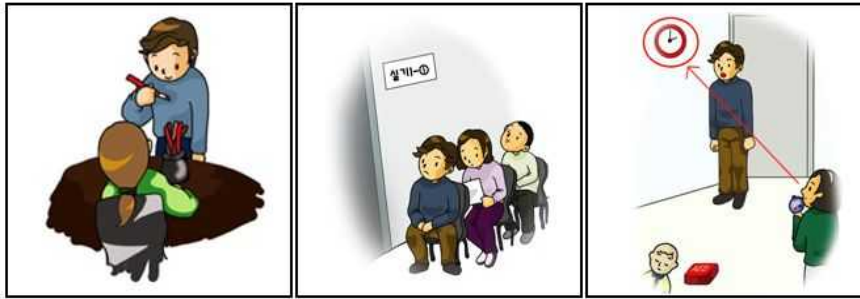
장갑은 시행본부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장갑의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응시자는 편안하게 응시할 수 있는 장갑을 지참하고 오면 됩니다.

응시자 대기실에서 똑같은 번호를 뽑으면 같은 문제에 응시하나요?

응시자는 응시자 대기실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번호를 추첨하게 됩니다.

이 번호와 응시자가 실제 시험실에 입실하는 시간대를 조합하여 응시자가 치를 문제가 결정됩니다.



① 숫자 추첨

② 입실 대기

③ 입실 시간 확인

국시원에서는 사전에 번호와 시간대의 조합표를 만들어 문항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두었으며, 시험실 담당 시험진행요원이 응시자의 추첨한 번호와 시험실 입실 시간을 보고 위 조합표에 정해져 있는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합니다.

따라서 같은 번호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실에 입실하는 시간대에 따라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응시자가 치르는 시험문제의 결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응시자 문제 결정 방법]

- ① 응시자 대기실에서 번호를 추첨
- ② 응시자가 추첨한 번호와 시험실에 입실한 시간을 조합하여 문제 결정
- ※ 대기실에서 추첨한 번호가 같아 하더라도 입실 시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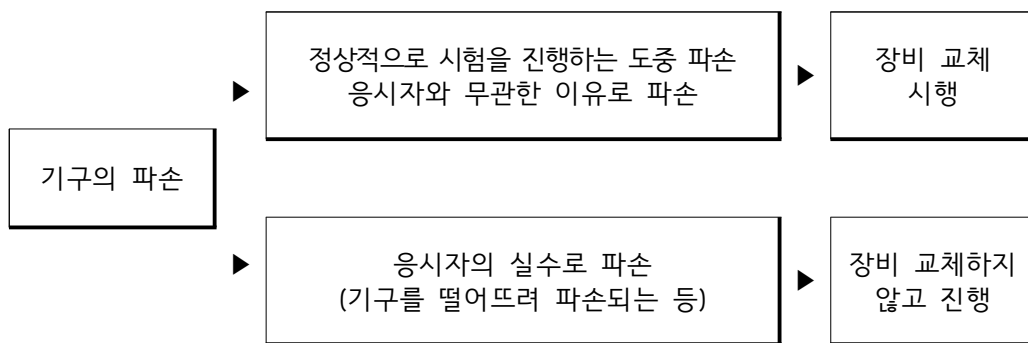
시험 도중 기구를 떨어뜨려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응시자가 본인의 실수로 기구를 떨어뜨려 부러진 경우에는 기구 교체 없이 시험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기구 사용 시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도중 응시자와 상관없이 기구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채점위원은 즉시 계측요원에게 시간 계측 정지를 지시하고 정상 기구로 교체한 후 응시자가 시험을 속개하도록 합니다.

국시원에서는 시험에 사용하는 전체 장비를 시험 시행 전에 여러 차례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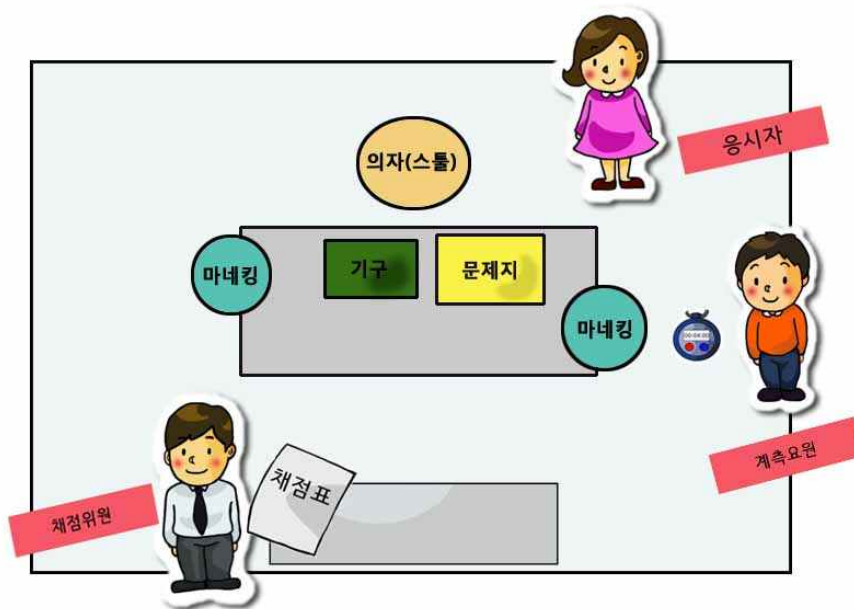
기구 관련 전문인과 전공분야 대학교수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 전에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시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시원에서는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의자의 높이와 마네킹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하면 아래와 같이 시험실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에는 문제지, 기구, 마네킹, 의자(스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험대의 마네킹은 덴티폼 및 개구 크기, 두경부의 각도가 모두 시험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자(스툴)의 높이는 응시자가 본인에게 맞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 채점위원이 응시자에게 의자(스툴)의 높이 조절을 완료하였는지 묻고, 응시자가 완료하였다고 대답하면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시험 시간은 문제별로 정해져 있고 시험항목 공개 시 시험항목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시험 시에는 문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한 시간까지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만 채점결과가 인정됩니다.

시험실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계측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 만약 응시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계측요원은 '시험 종료'를 외치고 채점위원이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킵니다. 만약 시험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하므로, 계측요원의 '시험 종료' 구령 즉시 시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기공사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1)

치과기공사 실기시험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교시 (필기)	1·2교시 필기시험에 응시합니다.	
2	점심시간		
3	3교시 (실기)	감독관 입실	2명의 감독관이 입실합니다. (필기시험과 동일한 감독관) ①
		시험 준비	시행계획 공고에서 안내한 응시자 준비물을 꺼내어 시험을 준비합니다. ② 개인소지품(공고한 응시자 준비물 이외의 물품 모두)은 가방에 넣어 교실 앞으로 내놓습니다.
		유의사항 설명	감독관이 응시자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③
		시험문제 및 준비물 배부	감독관이 시험문제와 준비물을 배부합니다. ④
		준비물 확인	응시자는 배부 받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교환합니다. ⑤
		석고모형에 인적사항 기재	배부 받은 석고모형의 바닥에 성명의 초성과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합니다. ⑦

위 표에서 보듯 치과기공사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같은 날에 시행합니다.

시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2)

1교시와 2교시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점심식사 후 3교시에는 별도의 자리 이동 없이 필기시험을 쳤던 자리에서 실기시험을 시행합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준비



1. 감독관 입실
2. 시험준비
3. 유의사항 설명
4. 시험문제 및 준비물 배부
5. 준비물 이상 여부 확인
6. 석고모형에 인적사항 기재
7. 시험 시작

시험시행



전기조각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1)

전기조각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각도를 다루는 능력과 왁스의 녹는점에 대한 이해는 치과기공사로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능력에 포함됩니다.

일반 조각도로 기공물을 제작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은 응시자가 왁스의 녹는점 및 그 온도에서 조각도 사용 방법을 알고 시행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조각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2)

또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전력을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전기조각도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은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이미 안내되어 있으며 아울러 응시자준비물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직종	시험방법	응시자 준비물
치과기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기공물 제작능력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도 일체, 칼, 알코올램프(알코올 포함), 토치램프, 연필, 색연필, margin pencil, 눈금자, 각도기, rubber dam, 납형분리제 및 붓, 유성펜, wax 털이용 붓, 화장지, 책상덮개(왁스 등이 책상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017년도 제45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는 에틸알코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기조각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알코올램프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등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배부 받은 재료에 이상이 있으면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준비물을 제외한 시험 재료는 모두 국시원에서 제공합니다.

시험 재료는 출제장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으로 판단된 재료들만 포장하여 응시자에게 제공됩니다.

응시자에게 배부하는 재료의 종류와 수량은 문제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제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물을 점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배부 받은 재료를 점검하는 시간에 본인의 재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재료나 교환해야 할 재료가 있으면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알려 새로 받도록 합니다.

재료에 이상이 있어서 교환하여 새로 받는 경우 외에 여분의 재료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 전문위원은 누구인가요?

치과기공사 실기시험장에는 시험 진행을 협조하는 시험장 전문위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치과공과 교수 또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치과기공 전문가를 시험장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감독관을 도와 응시자의 실기시험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시험장 전문위원은 응시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사고의 위험요소를 미리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예: “알코올램프에 붙은 왁스를 제거하세요.”)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공물 관련 자료 또는 미리 제작한 기공물을 보면서 조각해도 되나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안내하는 부정행위자의 기준 중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나 쪽지, 또는 신체 일부에 시험 관련 내용을 적어서 훑쳐보는 행위가 상식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식하듯 실기시험에서는 기공물 관련 사진이나 모형을 훑쳐보는 행위가 부정행위입니다.

공고된 응시자 준비물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기구나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이나 모형 등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은 정리하여 모두 교실 앞으로 내놓도록 합니다.



시험 중 화재 대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치과기공사 실기시험은 알코올램프, 토치램프 등의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시행본부에서는 각 시험실 당 간이 소화기를 2개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감독관 교육 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받으며, 기타 화재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숙지합니다.

시험실내에서 우선 배부한 소화기로 진압하고 시험장의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응시자가 화기 사용 시 화재 발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공물 제작 시 반드시 시험장에서 제공한 왁스만 써야 하나요?(1)

기공물 제작 시 필요한 장비 및 재료 중 시행계획 공고에서 안내한 응시자 준비물 이외의 재료는 모두 시행본부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응시자는 이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행본부에서 배부하는 재료가 평소에 쓰던 것과 달라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본인이 가져온 왁스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0점 처리 기준에 해당하므로 실기시험은 0점 처리됩니다.



"안됩니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미리 만들어 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고

응시자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알코올 램프에 붙은 왁스는 모두 제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공물 제작 시

반드시 시험장에서 제공한 왁스만 써야 하나요?(2)

시험장에서 지급하는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응시자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 전에 미리 만들어 오거나 기초적인 작업을 한 기공물로 시험장에서 마무리 가공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분적으로 본인의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시험장에서 지급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0점 처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반드시 국시원에서 배부한 왁스만을 사용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무심코 알코올램프에 붙여 놓은, 평소에 사용하던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0점 처리 대상이 되므로 알코올램프에 붙은 왁스는 시험장에 오기 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자·보조기기사

시험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1)

의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 대기실

1	입실	응시자 대기실에 입실합니다.
2	출석 확인	감독관으로부터 출석 확인을 받고 응시자 서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3	응시표 부착	감독관이 나누어 주는 응시표를 왼쪽 가슴 상단에 부착합니다.
4	휴대전화 등 제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5	응시자 교육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진행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실 앞 대기

1	출발 대기	감독관이 호명하면 소지품을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2	소지품 제출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소지품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합니다.
3	시험실 이동	시험 보조요원의 인솔을 받아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4	대기석 착석	시험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앞 응시자 대기 자리에 앉습니다. ※ 자리를 지정해 줌
5	응시 대기	시험실에서 입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시험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2)

시험실 내 시험 시행

1	입실	시험실에서 호명하면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2	문제 확인	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작업대에 자리합니다.
3	문제 및 장비 확인	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문제, 장비를 확인합니다. * 시험 문제는 소리 내어 읽지 않습니다.
4	시험 시작	“시작” 구령을 하면 시험을 시작합니다. * 시험 중 장비와 기구에 이상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손을 들어 조치를 받습니다.
5	시험 종료	시험 종료 * “시험 종료 10분 전, 5분 전”은 본부요원이 안내합니다. * “시험 종료” 구령 즉시 시험을 정지합니다. * 시험 종료 지시에 불응 하고 계속 시험을 진행하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 합니다. * 시험 종료 시간 전에 시험을 종료하였다더라도 “시험 종료” 구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시험실 이동

1	이동	첫 번째 문제를 종료한 응시자는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 시험실로 이동합니다.
2	대기석 착석	시험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 앞 응시자 대기 자리에 앉습니다. * 자리를 지정해 줌
3	응시 대기	시험실에서 입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4	입실	시험실에서 호명하면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 이하 진행 상황은 '시험실 1'과 동일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3)

응시 후 대기실

1	응시 후 대기실 입장	시험을 모두 마친 응시자는 보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 후 대기실에 입장합니다.
2	대기	오전 응시자는 오후 응시자 입실 완료 시간까지 대기하였다가 퇴장합니다.
3	퇴장	오후 응시자 입실이 완료되면 퇴장합니다.

※ '응시 후 대기실'은 오전 응시자에게만 해당하며, 오후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소지품을 돌려받고 시험장에서 퇴장합니다.



보호구는 개인이 지참해 가야 하나요?

실기시험 시행에서는 응시자 및 관련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작업의 특성 상 부상 위험이 있는 의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에서는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바, 응시자가 사용하는 대개의 보호구는 국시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호구는 시험문제에 따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신체에 직접 닿는 귀마개와 마스크 등 위생 관련 물품은 개개인이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을 준비하고, 고글 등 일반 물품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시험문제에 따라 국시원에서 공용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 개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타당한 보호구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 응시자가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의 착용은 필수이며,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합격자 결정 시 의지 제작 성적과 보조기 제작 성적에 각각 과락을 적용합니까?

실기시험에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므로 의지 제작과 보조기 제작 각각에 과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의지제작 50점	보조기제작 50점
총점 100점	

↪ 60점을 넘어야 함!!!

* 의지제작, 보조기제작
각각 과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점(100점)에서"
과락이 적용됨.



시험 중 장비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시원에서는 시험에 사용하는 전체 장비를 시험 시행 전에 여러 차례 점검합니다.

장비 관련 전문인과 전공분야 대학교수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여 시험 전에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시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 돌발적으로 장비 불량,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채점위원은 그 즉시 계측요원에게 시간 계측 정지를 지시하고 시험진행요원에게 정상 장비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여 정상 장비로 교체한 이후 응시자의 시험을 속개하게 됩니다.

단, 응시자가 해당 장비 사용이 미숙하여 장비가 고장 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국시원에서는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하면 불합격인가요?

시험 시간은 문제별로 정해져 있고 시험 시에는 문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한 시간까지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만 채점결과가 인정됩니다.

시험실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계측요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 만약 응시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계측요원은 '시험 종료'를 외치고 채점위원이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킵니다. 만약 시험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하므로, 계측요원의 '시험 종료' 구령 즉시 시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대표전화 1544-42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Q&A 자료집

발행일	2017년 10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1544-4244 www.kuksiwon.or.kr